

광주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나629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양성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생환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1. 12. 24.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6가단52979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477,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286,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3. 피고의 배우자인 C와 사이에 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25.부터 2016. 8. 20.까지 경추간판핵탈출증, 근막증후군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총 입원일수 1,787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의료비, 입원일당 및 간병비로 합계 194,459,13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2007. 4. 25.부터 2016. 8. 20.까지 사이의 총 입원일수 1,787일 중 771일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질병입원일당,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일당, 상해의료비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90,477,84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90,477,8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함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F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06. 3.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약 64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2006년 내지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와 같은 보험계약 중 상당수는 종신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등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는 단기간의 보험기간마다 새로이 체결된 것이거나 중도에 청약철회 내지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 내지 보장내용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저축적 성격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피고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C 등의 소득으로 월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얼마인지, 위 배우자의 소득 내지 재산으로 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위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입원기간의 적정성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환자의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약물 처치 및 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가 문진이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의 입원은 담당 의사들이 직접 피고를 면담, 진찰한 후에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결정한 것으로,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강력히 입원을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들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E협회 의료감정원은 피고에게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감정하였다.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에 대해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입원의 필요성 내지 적정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입원치료 내역에 대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한 별지 기재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입원기간보다 적은 기간의 입원치료를

통해서도 그 치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1심법원의 각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입원하는 동안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통증의 완화 내지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약제를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④ 피고는 “2009. 4. 1.부터 2014. 6. 30.까지 허위 또는 과잉 입원으로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8,519,391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16. 피고에 대해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피고에 대한 일부 입원내역이 적정 입원일수보다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상당 입원내역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입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불필요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에 관한 사기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피고가 각 병원에서 입원한 것을 들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기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

[별 지]

E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적정 입원기간(일)
1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35	21
2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8	8
3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38	자료부족
4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7	7
5	병원	무릎관절증	41	14
6	병원	무릎관절증	23	14
7	병원	무릎관절증	76	14

8	병원	무릎관절증	54	14
9	병원	무릎관절증	15	7
10	병원	무릎관절증	14	7
11	병원	무릎관절증	9	7
12	병원	무릎관절증	14	7
13	병원	허리뼈맞골반인대의 일과	18	7
14	병원	허리뼈맞골반인대의 일과	14	7
15	의원	허리뼈맞골반인대의 일과	14	7
16	병원	허리뼈맞골반인대의 일과	14	14(낙상)
17	병원	허리뼈맞골반인대의 일과	32	14
18	병원	허리뼈맞골반인대의 일과	14	14
19	병원	허리뼈맞골반인대의 일과	17	14(운동상)
20	병원	허리뼈맞골반인대의 일과	16	7
21	병원	본태성고협압	48	7
22	병원	본태성고협압	29	7
23	병원	본태성고협압	21	7
24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0	10
25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4	7
26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4	7(자료제한)
27	외과	기타추간판장애	14	14
28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5	15
29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3	13
30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43	7
31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3	7
32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9	7
33	병원	알개의 기타질환	14	7
34	병원	알개의 기타질환	28	7
35	병원	폐통	9	9
36	병원	폐통	10	7
37	병원	폐통	14	7
38	병원	폐통	10	7
39	의원	폐통	15	15
40	병원	폐통	15	7
41		폐통	21	자료부족
42	병원	폐통	14	7
43	의원	폐통	12	12
44	의원	폐통	18	7
45	의원	폐통	15	7
46	의원	폐통	20	자료부족
47	병원	폐통	14	14
48	병원	폐통	14	14
49	병원	폐통	41	14
50	병원	폐통	8	8
51	병원	폐통	26	7
52	병원	폐통	10	10
53	병원	폐통	22	자료부족
54	병원	폐통, 경추간판전위,유방암성신생물	15	15
55	병원	폐통	15	15
56		폐통	19	14
57	병원	폐통	18	14

58	의원	비통	15	15
59	병원	요추및기타추간관장애,경추염좌	34	34(교통사고)
60		비통	18	7
61	병원	어깨병변, 근막통증후군	15	15
62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22	22(낙상)
63	병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4	14
64	병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8	7
65	의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4	7
66	의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5	7
67	의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9	7
68	의원	양쪽일차성부릎관절증,어깨관절통	12	7
69	의원	양쪽일차성부릎관절증,어깨관절통	13	7
70	병원	양쪽일차성부릎관절증,어깨관절통	19	7
71	병원	양쪽일차성부릎관절증,어깨관절통	22	7
72	의원	양쪽일차성부릎관절증,어깨관절통	15	7
73	의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20	7
74	의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15	7
75	병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4	4
76	의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14	7
77	병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40	40(요추수술)
78	병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42	21
79	병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21	14
80	병원	경추간관장애	41	14
81	병원	경추간관장애	27	7
82	병원	경추간관장애	125	자료부족
83	병원	척추증, 부릎관절증	20	7
합계			1,787	834

